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1.6.8.)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 정의 신설(안 제2조)

- 5·18과 관련된 상이·수배·연행·구금 등을 원인으로 하여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

나. 보상금등 차감기준 마련(안 제21조)

-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배·보상 받은 경우 보상금등 산정금액에서 이미 배·보상 받은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차감 후 지급
- 현재가치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등 반영·산정

다. 성폭력피해자 상담·치료프로그램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3조)

- 상담·치료프로그램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전문성·인력·시설 등 고려
-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및 위탁 업무내용 고시
- 상담·치료프로그램 운영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라.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범위 및 절차 마련(안 제24조)

- 재단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범위는 5·18 관련 기념 및 추모

사업, 관련자 및 유족 복지사업, 문화·학술사업 등으로 함

- 경비 신청시 정관, 이사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제출

마. 일본식 용어인 “개호”를 “간병”으로 정비(안 제14조, 별표, 별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9조의2를 제20조의2로 하며, 제20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한다.

제2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5.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상이·수배·연행 또는 구금 등을 직접·간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21조(보상금등 차감)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련자 또는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등의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뺀 금액만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제23조(성폭력피해자 상담·치료프로그램 운영의 위탁) ①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전문성·인력·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5·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18민주화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
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복지사업
3. 5·18민주화운동 관련 문화·학술사업
4. 그 밖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예산·결산서가 포함된 해당 연도 이사회 회의록
3. 사업계획서

제3조(중전의 제2조)제1항 중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법 제3조”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 전단 중 “제3조 내지 제5조”를 “제4조 내지 제6조”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후치료비·개호비·보장구”를 “향후치료비·간병비·보장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개호비”를 “간병비”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6조)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22조(중전의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제27조(중전의 제23조) 중 “제20조 및 제21조제6항”을 “제22조 및 제25조 제6항”으로 한다.

별표 3 1급의 신체장해란 제3호·제4호 및 같은 표 2급의 신체장해란 제5호·제6호 중 “개호가”를 각각 “간병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가) 앞쪽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나) 앞쪽 제8항 중 “개호”를 “간병”으로 하며, 같은 앞쪽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로, 같은 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개호비”를 각각 “간병비”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중 “개호가”를 “간병이”로, “개호기간”을 “간병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중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제5호 중 “개호비”를 “간병비”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제8항 중 “개호”를 “간병”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9조의2”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20조의2”로, 같은 서식 앞쪽과 뒤쪽 중 “개호비”를 각각 “간병비”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중 “개호가”를 “간병이”로, “개호기간”을 “간병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제1호 중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2월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조(5.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상이·수배·연행 또는 구금 등을 직접·간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2조(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 및 법제처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등 15인 이내의	제3조(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 ----- ----- ----- ----- ----- ----- ----- ----- -----

위원으로 구성한다.	-----.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
<u>제3조 ~ 제6조</u> (생 략)	<u>제4조 ~ 제7조</u> (현행 제3조부터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	-----
	제6조까지와 같음)	되는 경우에 월 190,000원에	-----
<u>제7조</u>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등)	<u>제8조</u>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등)	별표5에 의한 평균여명기간을	-----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곱한 금액	-----
회의 및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u>제3조 내지 제5조</u> 의 규정을 준용	<u>제4조 내지 제6조</u> -----	<u>제14조 · 제15조</u> (생 략)	<u>제15조 · 제16조</u> (현행 제14조 및
한다. 이 경우 “보상지원위원회”는	---. -----		제15조와 같음)
“보상심의위원회”로, “보상지원	-----	<u>제16조</u> (재심사 요구등) 보상심의	<u>제17조</u> (재심사 요구등) -----
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	-----	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 소속	-----	있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 <u>제9조</u> -----
공무원”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	-----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
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	대하여 당해분과위원회에 재심사	-----
일반직공무원”은 “지방서기관”	-----	또는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으로 본다.	-----.	<u>제17조 ~ 제19조의2</u> (생 략)	<u>제18조 ~ 제20조의2</u> (현행 제17조
<u>제8조 ~ 제12조</u> (생 략)	<u>제9조 ~ 제13조</u> (현행 제8조부터		부터 제19조의2까지와 같음)
	제12조까지와 같음)	<신 설>	<u>제21조</u> (보상금등 차감) ①법 제16조
<u>제13조</u> (의료지원금) 법 제6조제1	<u>제14조</u> (의료지원금) -----		<u>제2항</u> 에 따라 관련자 또는 유족이
항의 규정에 의한 <u>향후치료비 ·</u>	----- <u>향후치료비 ·</u>		<u>동일한 사유로 「민주화운동 관련자</u>
<u>개호비 · 보장구 구입비등</u> 의료	<u>간병비 · 보장구</u> -----		<u>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u>
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		<u>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보상</u>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u>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법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등의</u>
2. <u>개호비</u> 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2. <u>간병비</u> -----		<u>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u>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		<u>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뺀</u>

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결정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및 계좌입금 통장 사본 각 1부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 설>	금액만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제22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9조-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제23조(성폭력피해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의 위탁) ①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전문성·인력·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신 설>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5·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①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18민주화운동 기념 및 추모 사업 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복지사업 3. 5·18민주화운동 관련 문화·학술사업 4. 그 밖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예산·결산서가 포함된 해당 연도 이사회 회의록 3. 사업계획서
---	---	--------------------	--

<u>제21조</u> · <u>제22조</u> (생략)	<u>제25조</u> · <u>제26조</u> (현행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음)
<u>제23조</u> (지급시기) 보상금등과 기타 지원금은 <u>제20조</u> 및 <u>제21조제6항</u> 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는 날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u>제27조</u> (지급시기) ----- ----- <u>제22조</u> 및 <u>제25조제6항</u> ----- ----- ----- --.
<u>제24조</u> · <u>제25조</u> (생략)	<u>제28조</u> · <u>제29조</u> (현행 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연락처	(044) 205 - 3259